

# 2019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##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요

### □ 추진목적

- 연구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□ **평가원칙** : 공정성, 객관성, 투명성, 정보접근성 등을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함.

□ **평가기간** : 2019.12.20(금)~12.23(월)

### □ 평가방법

- 담당부서 자체평가(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) 및 관련부서 검토 회의
- \* 분야별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하고 관련자들이 모여 최종평가 후 결과보고서 작성

### □ 평가절차 및 시행주체



### □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

-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표준(안)으로 평가 10개분야 158개 지표
- 각 지표별 추진실적의 평가기준 충족도 평가
  - 분야별 세부지표 평균값을 측정하고, 구간별 등급 부여

구분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점수	2점	1점	0점	평가제외	평가제외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평균점수	100점 ~90점	90점 미만 ~80점	80점 미만 ~70점	70점 미만 ~60점	60점 미만

※ 평가 불가능 지표에(정보 없음, 해당 없음) 대해서는 평가 제외

## 2. 종합 평가결과

### 1) 점검결과 종합(집계표)

○ 평가결과 : 92.5점/ 1등급(총 10개분야, 33개항목, 158개 지표)

항목	이슈	총계	답변결과					환산점수 (등급)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30	20	3		6	1	93.5 (1등급)
2	고용상의 비차별	17	16	1				97.1 (1등급)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6	16					100.0 (1등급)
4	강제 노동의 금지	11	8	1		1	1	94.4 (1등급)
5	아동노동의 금지	14	5				9	100.0 (1등급)
6	산업안전 보장	17	11	3			3	89.3 (2등급)
7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10	1	9				55.0 (5등급)
8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10	3				7	100.0 (1등급)
9	환경권 보장	18	10	1			7	95.5 (1등급)
10	소비자인권 보호	15	15					100.0 (1등급)
<b>합 계</b>		<b>158</b>	<b>105</b>	<b>18</b>	<b>0</b>	<b>7</b>	<b>28</b>	<b>92.5</b> <b>(1등급)</b>

\* 정보없음 및 해당없음 지표 제외한 123개 지표 점수 반영

### 2) 평가결과 요약

- 금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각 분야별 관련부서장 및 관련자가 모여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으며
  - 지표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후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인권경영에 반영할 계획임
- 총 10개분야 158개 지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종합점수는 92.5점(1등급)으로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인권리스크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, 지표별 편차가 있어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.

- ‘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’, ‘아동노동의 금지’, ‘현지주민의 인권보호’, ‘소비자인권 보호’ 는 그간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리스크가 잘 관리되는 항목임.
- ‘산업안전 보장’, ‘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’ 의 부분은 인권리스크가 커서 개선된 제도 등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실제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남.
  - 연구원의 인권경영 기본계획과 ‘인권경영 이행 지침’ 이 12월에 제정되고 실행되어 실제 협력사등과의 계약에 직접 적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문제여서 2020년부터 제도 적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으로 판단됨. 이에 관리부서와 계약부서의 협업을 통해 2020년에는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.
- 평가지표중 다음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내용에 개정 요청이 있는 바, 내부적인 논의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년도부터 변경하여 적용하는 방안 마련코자 함.

항목	변경전	변경후
8.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8-2-1. 연구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	1안) 연구원은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2안) 연구원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.
	8-2-2. 연구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	8-2-2. 삭제
10. 소비자인권 보호	10-2-1. 연구원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, 해당제품을 조속히 회수(리콜)한다	10-2-1. 연구원은 연구결과 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, 필요시 해당 보고서를 조속히 회수한다
	10-2-3.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.	10-2-3. 연구원은 보고서 발간 지체 등 연구원의 과실로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.

### 3) 조치 및 추진계획

- 점검결과 미흡한 지표에대한 보완 조치 계획 수립 : 2020년 1/4분기
-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사 교육 시행 : 2020년 1/4분기
  - 인권영향평가 실행 전 평가 참여자에 관한 별도 교육 선행
-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: 2020년 4/4분기